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람	기 관 의 장

공 보

제1180호 2018년 12월 7일(월)

조 례

○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·관리 조례 ····· 2

공 고

○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····· 8
○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····· 14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·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8년 12월 7일

속 초 시 장 인

속초시 조례 제2639호

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·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속초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·보호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(이하 “문화유산”이라 한다)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「문화재보호법」, 「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」,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·도 지정문화재, 전통사찰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, 예술적, 학술적, 기술적,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·무형의 자원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
2.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
3. 향토문화, 토속,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
4. 향토문화기반시설 확충, 조성연구에 필요한 자료

5.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·보호·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

제3조(기본원칙)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의 보존·보호·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회 설치)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,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
2. 문화유산의 보존·보호·관리에 관한 사항
3. 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
4. 문화유산의 보호·관리에 따른 예산수립 및 집행 사항
5. 향토유적의 도지정문화재로의 지정 신청 사항
6.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·보호·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

②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, 공무원, 소유자, 전수자,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교육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.

⑦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하며,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
2. 위원이 해촉을 원할 경우
3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문화유산의 지정)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조에서 정의한 문화유산을 속초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

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한 문화유산에 대해 소유자, 전수자 등에게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.

제11조(보호구역 지정)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. 단,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.

제12조(지정의 해제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.

1.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
2. 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
3.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.

제13조(지정의 고시)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를 할 때 이를 고시해야 하며, 변경할 경우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. 이 경우에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해야 한다.

제14조(관리자 지정) ① 시장은 문화유산에 대해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

향토문화관리자(이하“관리자”라 한다)로 지정한다.

② 시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에 대해 소재한 관할구역의 동장 또는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자를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5조(보존·보호·관리) 문화유산을 보존·보호·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.

1.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·보호·관리해야 한다.
2.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해야 한다.
3. 시장은 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.

제16조(관리점검) 시장은 문화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·보호·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17조(경비보조 등) ① 문화유산의 보존 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향토문화유산의 보존·보호·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
제18조(관리기록)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리내용에 대해 그 기록을 작성·보존해야 한다.

제19조(홍보 등)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해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. 또한 문화시민의 자긍심과 애

향심을 고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·보호·관리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제정 이유

「문화재보호법」, 「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향토의 역사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크고 이에 준하는 고자료 등 향토문화유산의 보호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향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속초시 공고 제2018－1010호

「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8년 12월 6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「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

2. 개정이유

당직 근무자 모두에게 대체휴무를 시행함으로써 평일 숙직자과 일직·주말 숙직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제1조(목적) :「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」 관련 조문 현행화

○ 제5조(숙직근무자의 휴무) : 당직근무자(일·숙직)의 대체휴무 규정변경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8. 12.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주 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
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팀
- 연락처 : 전화(033-639-2232), 팩스(033-639-2590)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

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팀(☎033-639-223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규칙 제 호

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7조”를 “「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당직근무자의 휴무) 당직근무자(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 당직근무의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(벌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)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속초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, 도난, 보안,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8조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5조(숙직근무자의 휴무) 숙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없는 한 휴무로 하여 휴식 또는 취침하게 할 수 있다.	제5조(당직근무자의 휴무) 당직근무자(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 당직근무의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(벌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)하게 할 수 있다.

강원도 시·군 中 유사 규칙 제정현황

기관명	내용
강원도	제5조(당직근무자의휴무) 당직근무자(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)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(벌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)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2003·8·30,2015.7.10,2017.11.10.>
동해시	제5조(숙직근무자의 휴무) ①숙직근무자(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)에게는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전일(全日)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3.11.01., 2017.12.29.>
홍천군	제5조(당직근무자의 휴무) 숙직근무자(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로 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당직근무(숙직 또는 일직)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4.7.11 규칙 제766호, 2004.11.25. 규칙 제986호, 2013.2.1, 2017.11.27.>
정선군	제5조(당직근무자의 휴무)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3.12.26.,2018.05.03> 다만,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<단서 신설 2018.5.3.> [제목개정 2018.05.03]
인제군	제5조(당직근무자의 휴무) 당직근무자(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)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횡성군	제5조(숙직근무자의 휴무) 숙직근무자(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,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(단, 월 2일을 초과할 수 없다) <개정 2004.3.2., 2017.12.27.>

기관명	내용
양양군	제5조(당직근무자의 휴무) 당직근무자(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, 휴무상황은 근무상황부(전산시스템 등)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 9. 13, 2004. 6. 30, 2018.8.3>
춘천시	제5조(근무자의 휴무) 당직근무자(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3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2·4·24, 2003·9·5, 2017.11.30.>[제목개정 2017.11.30.]
태백시	제5조(당직근무자의 휴무) 당직근무자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,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(토요일 및 공휴일, 휴관일 제외)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8. 9. 14.]
삼척시	제5조(당직근무자의 휴무) 당직근무자(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의 숙직근무자와 일직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의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〈개정 2003·05·31, 2003·11·05., 2018.03.16.〉
평창군	제5조(당직근무자의 휴무) 당직근무자(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)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(벌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)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94·12·31, 05.1.7, 18.9.21.>
고성군	제5조(숙직근무자의 휴무) ①당직근무자(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면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일직과 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(임시 공휴일 포함)인 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단, 페널티 적용으로 인한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1994.7.1, 2003.2.28, 2008.12.30, 2018.3.30.>

속초시 공고 제2018 - 1014호

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」 제19조(입법예고 대상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2월 7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2. 개정이유

공설봉안시설 사용제한 조항을 개정하여 장사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을 통해 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오타 및 띄어쓰기, 자구의 수정(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, 제8조, 제10조)

나. 사용제한 규정 일부 개정(안 제7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**2018년 12월 28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·전화번호

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24826/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

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(전화: 033-639-2951, FAX: 033-639-2739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(033-639-295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규칙 제 호

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」”를 “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」”를 “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23조 제2항”을 “제2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18조 제1항”을 “제1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6항 중 “제18조 제4항”을 “제18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사용제한) 공설봉안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은 공설봉안묘를 사용할 수 없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14조 제2항”을 “제1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「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----------.
제2조(사용신고 등) ①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속초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.	제2조(사용신고 등) ①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----------.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사용료 등 반환) ① 조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3조(사용료 등 반환) ① -- 제23조제2항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사용기간의 연장) ① 조례 제	제4조(사용기간의 연장) ① --- 제1

18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8조제1항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봉안시설의 사용원칙) ① ~ ⑤ (생 략)	제5조(봉안시설의 사용원칙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조례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유골도 산골시설에서 자연장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.	⑥ -- 제18조제4항----------.
제7조(사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을 제한한다.	제7조(사용제한) 공설봉안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은 공설봉안묘를 사용할 수 없다.
1. 공설봉안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추모의집 및 공설봉안묘에 안치된 개인단은 부부단으로 이동할 수 없다.	
2. 개장유골 또는 추모의집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은 공설봉안묘를 사용할 수 없다. 단,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에 있던 유연분묘 중 현재 추모의 집에 임시로 안치된 유골은 예외로 한다	
3. 다른 지역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도 공설봉안묘를 사용할 수	

없다.	
제8조(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) ①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후 발생하는 인체보철물 중 치금혼합물은 화장시설 사무실에 보관한 후 일반 매각방식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.	제8조(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) ① --- 제14조제2항---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관리·운영의 위탁범위) ① (생 략)	제10조(관리·운영의 위탁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탁시에는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「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	② ----------「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------.